

의안번호	2210000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5.5.29.
추계번호	25C2508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,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,800만원(연평균 2,76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(안 제5조의2)	10	10	10	10	10	50	10
실태조사 (안 제5조의3)	44	—	—	44	—	88	17.6
합 계	54	10	10	54	10	138	27.6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 (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)	(제1항)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	의무규정
2	안 제5조의3 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5조의4 (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)	(제1항)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(이하 "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조의5 (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2 (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)	○	-
2	안 제5조의3 (실태조사)	○	-
3	안 제5조의4 (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)	X	·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¹⁾ 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(2025년 예산 8억 7,600만원), 실종아동전문팀을 구성하여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,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등을 하고 있음 또한,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(이하 "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4	안 제7조의5 (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)	X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법에 따르면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,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
- 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사업(안 제7조의5)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

1) 해당 사업은 위치추적단말기(GPS), 찾기 물품(전단지, 현수막, 명함 등), 유전자 정보 포스터 제작·배포 등이 포함

-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수, 대상자 중 해당 장치가 없는 자의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업무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위탁·수행하는 것으로 하고,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,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5조의2) 동법 제3조제1항²⁾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³⁾에 따른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·조정을 위하여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

2) 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, 조속한 발견·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
2.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·교육 및 홍보
4.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
5.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
6.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
7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3)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
3.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
4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현재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⁴⁾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종아동등의 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·조정하고 있으나, ‘실종아동등’의 정의에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신설을 규정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·조정을 하도록 함
- 유사사례인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례를 준용하고,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다고 가정
- (회의수당 지급 대상자 수)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에 위촉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⁾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회의 개최 횟수) 회의 횟수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연 4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신설(안 제5조의2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(안 제5조의2)	10	10	10	10	10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안 제5조의3)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추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총 8,800만원(연평균 1,760만원)으로 추계
 - 현행법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, 실시 주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실태조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것임
 -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계기간(2026~2030년) 중 2회 실시
 - ‘2021년 실종아동등 실태조사’ 비용(4,400만원)을 준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4) 제10조(아동정책조정위원회)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이하 생략)

5)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기획재정부)

·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·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3] 실태조사 실시(안 제5조의3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5조의3)	44	-	-	44	-	88	17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